

업계소식 - 2017 년 4 월 10 일 - 영업 점포

이미용위원회(이하 위원회)에서 면허 소지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. 이발, 미용, 매니큐어링, 피부미용, 또는 전기분해요법 서비스를 시행하고 댓가를 지불받는 모든 시설은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7317 항에 따른 시설 면허를 취득해야하며, 해당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“개인 또는 회사와 법인이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즉 만료되지 않은 면허 없이 또는 위원회에서 면허를 발급한 장소 이외의 시설이나 이동 설비차에서 이발, 미용, 또는 전기분해요법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. 또한 이 장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발, 미용, 또는 전기 분해요법의 행위를 하는 시설 또는 기타 영업 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. 이 장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 해당 지역에서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 벌금이 부과되고 경범죄로 처벌 될 수 있다.”

영업점은 다음 두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법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.

1. 상가 건물의 소유주(**이하 소유주**)는 전체 상가 건물에 대한 시설 면허를 취득해야하며, 이 면허는 해당 건물에 속하는 모든 개별적인 점포들도 포함하게 됩니다.

또는

2. 개별적인 점포의 임차인(**개인**)은 위원회로부터 본인의 점포에 대한 시설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.

주의사항:

소유주가 시설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, 소유주에게 각각의 개별적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. 소유주는 반드시 건물 안의 모든 점포 열쇠를 소지하고 위원회의 점검시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.

개인이 시설 면허를 취득한 경우, 소유주에게 개별적인 영업점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